제114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
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 [2022. 4. 14.(목)]

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(안)

심 사 보 고 서

창 원 시 의 회
(문화환경도시위원회)

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22. 4. 14.
문화환경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: 2022. 4. 8. 창원시장

나. 회 부 일 자: 2022. 4. 8.

다. 상 정 및 의 결 일 자: 제114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 개회 중
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(2022.4.14.) 상정, 질의・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 : 환경도시국장 이정근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」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고농도 유기성 폐수인 음폐수 처리시설로

○ 설치공사 입찰시 시공사 3년 의무운전 조건을 명시하여 준공 후 처음 3년은 시공사가 의무운전(민간위탁)하여야 하며,

○ 의무운전 후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수탁자 공개모집(입찰)로 실무 운영경험과 기술인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○ 이에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6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요청함.

나. 주요 내용

1) 시설 개요

○ 시 설 명 :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

○ 소 재 지 : 창원시 성산구 창곡로 108번길 8
(창원생활쓰레기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내)

○ 시설규모 : 부지면적 7,826㎡(종합단지 전체부지 39,060 ㎡)

○ 시설현황 : 음폐수 200㎥/일

○ 처리공정 : 음폐수 유입 → 혐기성 소화 → 바이오가스발생 → 전기생산

○ 시설용도 :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음폐수처리

2) 민간위탁 개요

○ 위탁기간 : 준공일로부터 3년간 의무운전(시공사)

※ 의무운전 후 **공개모집(입찰)**을 통한 **수탁자 선정**

○ 운 영 비 : 연간 37억 정도

○ 위탁사무

-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- 바이오에너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적정 관리
- 바이오에너지화처리시설 전기 및 급·배수설비 등 시설유지관리 등

3) 기대효과

○ 준공 후 시설 하자 책임성 명확성 등 시설 안정화를 위하여 시공사 3년 의무운전 시행(입찰 조건)

○ 실무 운전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의 운전으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

○ 음폐수 바이오에너지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마산만 수질개선 및 대체연료 전기 생산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

다. 동의 사항

○ 동의내용 : 창원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

○ 위탁기간 : 준공일로부터 3년

○ 위탁기관 : 시공사

※ 의무운전 후 공개모집(입찰)을 통한 민간위탁자 선정

라. 향후 추진계획

○ 의무운전(3년) : 바이오에너지화 시설·장비 유지 관리

○ 의무운전 이후 : 민간위탁 **"공개입찰"** / 민간위탁운영 수탁자 선정

3. 관련 법규

○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○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
○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(관리운영)

○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, 제6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: 박선희)

○ 본 동의 건은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, 제5조 및 「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」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,

○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7조에 따라 '창원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' 심의·의결을 거치고,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를 근거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○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인 ‘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운영’에 대하여 민간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을 통해 행정능률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, 「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」 운영에 대하여 **「동의」**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(대체토론)요지(주요문제점) : 없음

6. 심사결과 : **원안 가결**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(부대의견, 건의사항, 촉구사항 등) : 없음